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 7·8·9급 총계 | | | | 4,703 |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8급 | 8급 총계 | | 220 | | |
| | | 간 호 | 소 계 | | 214 | |
| | | | 간 호 | 간 호 | 207 | 경기도 4, 수원시 25, 용인시 6, 고양시 6, 화성시 10, 성남시 30, 부천시 10, 남양주시 15, 평택시 9, 안양시 8, 시흥시 3, 김포시 6, 의정부시 4, 광주시 8, 하남시 7, 양주시 3, 광명시 11, 군포시 2, 오산시 6, 안성시 10, 구리시 1, 포천시 5, 양평군 7, 여주시 1, 동두천시 3, 과천시 1, 가평군 4, 연천군 2 |
| | | | 간 호 (장애인) | | 7 | 평택시 1, 안양시 1, 시흥시 1, 양주시 1, 광명시 1, 연천군 2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6 | 화성시 2, 포천시 1, 양평군 3 | |
| | 9급 총계 | | | | 4,443 | |
| 9급 | 행 정 | 소 계 | | 1,825 | | |
| | | 일반행정 | | 1,533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19, 수원시 78, 용인시 98, 고양시 77, 화성시 129, 성남시 120, 부천시 95, 남양주시 112, 안산시 36, 평택시 43, 안양시 30, 시흥시 76, 파주시 8, 김포시 64, 의정부시 36, 광주시 56, 하남시 22, 양주시 25, 광명시 42, 군포시 18, 오산시 58, 이천시 8, 안성시 40, 구리시 8, 포천시 13, 의왕시 32, 양평군 31, 여주시 18, 동두천시 40, 과천시 29, 가평군 20, 연천군 20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12, 용인시의회 3, 고양시의회 2, 성남시의회 2, 남양주시의회 1, 안산시의회 1, 안양시의회 2, 시흥시의회 1, 파주시의회 2, 의정부시의회 1, 광주시의회 1, 하남시의회 1, 양주시의회 1, 양평군의회 1, 연천군의회 1 | |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장애인) | 206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4, 수원시 18, 용인시 11, 고양시 9, 화성시 25, 성남시 22, 부천시 12, 남양주시 18, 안산시 6, 평택시 4, 안양시 3, 시흥시 6, 파주시 6, 김포시 8, 의정부시 2, 광주시 10, 하남시 2, 군포시 2, 오산시 4, 이천시 4, 안성시 4, 구리시 3, 포천시 4, 의왕시 1, 양평군 3, 동두천시 2, 과천시 5, 가평군 4, 연천군 2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2 |
| |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86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2, 수원시 4, 용인시 6, 고양시 4, 화성시 12, 성남시 2, 부천시 3, 남양주시 5, 안산시 3, 평택시 3, 안양시 2, 시흥시 2, 파주시 2, 김포시 1, 의정부시 2, 광주시 3, 하남시 1, 광명시 2, 군포시 2, 오산시 2, 이천시 2, 안성시 2, 구리시 1, 포천시 2, 의왕시 2, 양평군 5, 여주시 2, 동두천시 1, 과천시 1, 가평군 1, 연천군 2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1, 용인시의회 1 |
| | | 세 무 | 소 계 | 205 | |
| | | | 지 방 세 | 159 | 수원시 6, 용인시 16, 고양시 14, 화성시 11, 성남시 16, 부천시 16, 남양주시 2, 안산시 6, 평택시 7, 안양시 8, 시흥시 2, 파주시 2, 김포시 8, 의정부시 2, 광주시 11, 하남시 5, 양주시 2, 광명시 1, 군포시 3, 오산시 5, 이천시 1, 안성시 5, 구리시 1, 의왕시 2, 양평군 2, 여주시 1, 동두천시 1, 가평군 1, 연천군 2 |
| | | | 지 방 세 (장애인) | 41 | 수원시 3, 용인시 2, 고양시 3, 화성시 4, 성남시 3, 부천시 3, 평택시 1, 안양시 1, 시흥시 1, 파주시 3, 김포시 2, 광주시 3, 하남시 1, 광명시 1, 군포시 1, 안성시 3, 구리시 1, 양평군 2, 가평군 1, 연천군 2 |
| | | | 지 방 세 (저소득층) | 5 | 수원시 1, 고양시 1, 성남시 1, 부천시 2 |
| | | 전 산 | 소 계 | 88 | |
| | | | 전 산 | 69 |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2, 수원시 2, 용인시 3, 고양시 4, 화성시 5, 성남시 5, 부천시 4, 남양주시 1, 안산시 3, 평택시 2, 안양시 6, 시흥시 2, 파주시 2, 김포시 4, 의정부시 1, 광주시 2, 하남시 2, 광명시 1, 군포시 2, 오산시 2, 이천시 1, 안성시 3, 양평군 2, 동두천시 1, 과천시 2, 가평군 3, 연천군 1 <지방의회> 성남시의회 1 |
| | | | 전 산 (장애인) | 18 | 경기도 2, 수원시 3, 고양시 1, 평택시 1, 시흥시 1, 김포시 1, 광주시 1, 광명시 1, 안성시 3, 의왕시 1, 동두천시 1, 가평군 2 |
| | | | 전 산 (저소득층) | 1 | 성남시 1 |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9급 | 사회복지 | 소 계 | 757 | |
| | | | 사회복지 | 627 | 경기도 2, 수원시 36, 용인시 55, 고양시 31, 화성시 40, 성남시 60, 부천시 52, 남양주시 36, 안산시 24, 평택시 26, 안양시 29, 시흥시 17, 파주시 2, 김포시 13, 의정부시 13, 광주시 16, 하남시 12, 양주시 5, 광명시 12, 군포시 7, 오산시 30, 이천시 6, 안성시 23, 구리시 8, 포천시 15, 의왕시 6, 양평군 14, 여주시 18, 동두천시 5, 과천시 4, 가평군 5, 연천군 5 |
| | | | 사회복지 (장애인) | 91 | 경기도 2, 수원시 4, 용인시 7, 고양시 5, 성남시 10, 부천시 6, 남양주시 5, 안산시 6, 평택시 3, 안양시 1, 시흥시 1, 파주시 5, 김포시 5, 의정부시 1, 광주시 5, 하남시 2, 광명시 2, 오산시 3, 안성시 3, 구리시 1, 포천시 1, 양평군 3, 여주시 3, 동두천시 2, 과천시 1, 가평군 2, 연천군 2 |
| |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39 | 수원시 4, 용인시 3, 고양시 2, 부천시 2, 남양주시 4, 안산시 2, 평택시 3, 안양시 2, 시흥시 1, 김포시 2, 의정부시 1, 광주시 2, 하남시 1, 광명시 2, 오산시 1, 안성시 4, 동두천시 1, 가평군 1, 연천군 1 |
| | | 사 서 | 소 계 | 108 | |
| | | | 사 서 | 88 | 경기도 1, 수원시 3, 용인시 14, 화성시 3, 성남시 3, 남양주시 3, 안산시 1, 평택시 6, 안양시 7, 시흥시 1, 김포시 5, 의정부시 1, 광주시 8, 하남시 5, 양주시 1, 광명시 4, 오산시 3, 이천시 1, 안성시 9, 구리시 3, 의왕시 2, 양평군 1, 과천시 1, 가평군 1, 연천군 1 |
| | | | 사 서 (장애인) | 20 | 수원시 2, 용인시 1, 평택시 1, 안양시 1, 시흥시 1, 의정부시 1, 광주시 2, 하남시 1, 양주시 1, 안성시 3, 구리시 2, 의왕시 1, 양평군 2, 가평군 1 |
| | | 속 기 | 속 기 | 1 | 안산시의회 1 |
| | | 공 업 | 소 계 | 206 | |
| | | | 일반기계 | 85 | 수원시 5, 용인시 5, 고양시 8, 화성시 5, 성남시 11, 부천시 6, 남양주시 3, 안산시 2, 평택시 1, 안양시 6, 시흥시 4, 파주시 2, 김포시 3, 의정부시 2, 광주시 5, 하남시 3, 광명시 1, 군포시 1, 이천시 1, 안성시 2, 구리시 1, 의왕시 1, 양평군 2, 여주시 1, 과천시 2, 연천군 2 |
| | | | 일반기계 (장애인) | 3 | 시흥시 1, 광주시 1, 군포시 1 |
| | | | 일반기계 (저소득층) | 1 | 성남시 1 |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9급 | 공 업 | 일반전기 | 84 | 용인시 2, 고양시 10, 화성시 5, 성남시 11, 부천시 6, 남양주시 4, 안산시 4, 평택시 1, 안양시 5, 시흥시 3, 파주시 2, 김포시 4, 의정부시 3, 광주시 5, 하남시 1, 양주시 2, 광명시 1, 안성시 6, 구리시 2, 양평군 2, 여주시 1, 가평군 2, 연천군 2 |
| | | | 일반전기 (장애인) | 1 | 시흥시 1 |
| | | | 일반전기 (저소득층) | 1 | 성남시 1 |
| | | | 일반화공 | 31 | 경기도 2, 용인시 1, 화성시 3, 성남시 3, 부천시 1, 남양주시 3, 안산시 3, 평택시 1, 안양시 2, 시흥시 2, 김포시 2, 의정부시 1, 군포시 1, 이천시 1, 구리시 1, 의왕시 1, 양평군 2, 연천군 1 |
| | | 소 계 | 75 | | |
| | | 농 업 | 일반농업 | 47 | 용인시 3, 고양시 1, 화성시 5, 성남시 1, 부천시 2, 남양주시 1, 안산시 2, 평택시 3, 시흥시 1, 김포시 7, 광주시 3, 하남시 1, 양주시 4, 이천시 1, 안성시 6, 양평군 2, 여주시 2, 연천군 2 |
| | | | 일반농업 (장애인) | 4 | 김포시 1, 광주시 1, 여주시 2 |
| | | | 축 산 | 24 | 용인시 2, 화성시 5, 평택시 3, 안양시 1, 김포시 1, 양주시 2, 이천시 1, 안성시 5, 구리시 1, 양평군 2, 연천군 1 |
| | | 녹 지 | 소 계 | 98 | |
| | | | 산림자원 | 52 | 경기도 2, 용인시 5, 고양시 2, 화성시 6, 성남시 7, 남양주시 2, 안산시 1, 평택시 3, 시흥시 2, 파주시 2, 김포시 3, 의정부시 1, 광주시 6, 광명시 1, 이천시 1, 안성시 3, 의왕시 1, 양평군 2, 가평군 2 |
| | | | 산림자원 (장애인) | 2 | 평택시 1, 광주시 1 |
| | | | 조 경 | 44 | 경기도 1, 용인시 1, 부천시 7, 남양주시 1, 안산시 2, 평택시 4, 안양시 3, 시흥시 2, 파주시 2, 김포시 2, 의정부시 1, 하남시 2, 광명시 2, 군포시 2, 오산시 4, 안성시 5, 의왕시 1, 양평군 1, 연천군 1 |
| | 해양수산 | | 일반수산 | 9 | 경기도 5, 화성시 2, 안산시 1, 김포시 1 |
| | 보 건 | 소 계 | 78 | | |
| | | 보 건 | 74 | 수원시 1, 용인시 3, 고양시 5, 화성시 9, 성남시 7, 부천시 2, 남양주시 3, 안산시 2, 평택시 3, 안양시 5, 시흥시 2, 김포시 2, 의정부시 2, 광주시 3, 하남시 1, 오산시 4, 이천시 2, 안성시 6, 구리시 1, 양평군 4, 여주시 3, 가평군 2, 연천군 2 | |
| | | 보 건 (장애인) | 4 | 평택시 1, 시흥시 1, 양평군 2 | |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9급 | 환 경 | 소 계 | 107 | |
| | | | 일반환경 | 102 | 용인시 10, 화성시 10, 성남시 5, 부천시 5, 남양주시 6, 안산시 3, 평택시 6, 안양시 11, 시흥시 5, 파주시 3, 김포시 9, 의정부시 2, 광주시 4, 하남시 1, 양주시 1, 광명시 2, 오산시 3, 이천시 1, 안성시 6, 포천시 5, 양평군 2, 동두천시 1, 과천시 1 |
| | | | 일반환경 (장애인) | 4 | 평택시 1, 시흥시 1, 김포시 1, 광주시 1 |
| | | | 일반환경 (저소득층) | 1 | 양주시 1 |
| | | 시 설 | 소 계 | 744 | |
| | | | 도시계획 | 19 | 수원시 2, 용인시 1, 화성시 3, 남양주시 1, 안산시 1, 평택시 2, 시흥시 2, 광주시 2, 양주시 1, 광명시 1, 군포시 1, 오산시 1, 이천시 1 |
| | | | 도시계획 (장애인) | 1 | 광주시 1 |
| | | | 일반토목 | 396 | 경기도 6, 수원시 24, 용인시 16, 고양시 5, 화성시 36, 부천시 28, 남양주시 21, 안산시 14, 평택시 13, 안양시 15, 시흥시 9, 파주시 6, 김포시 39, 의정부시 4, 광주시 30, 하남시 2, 양주시 5, 광명시 6, 군포시 3, 오산시 23, 이천시 8, 안성시 15, 구리시 3, 포천시 10, 의왕시 3, 양평군 10, 여주시 6, 동두천시 10, 과천시 7, 가평군 7, 연천군 12 |
| | | | 일반토목 (장애인) | 14 | 경기도 2, 고양시 1, 부천시 1, 평택시 1, 시흥시 1, 파주시 1, 광주시 1, 양주시 2, 오산시 1, 가평군 3 |
| | | | 일반토목 (저소득층) | 6 | 부천시 1, 시흥시 1, 김포시 1, 광주시 2, 과천시 1 |
| | | | 수도토목 | 1 | 남양주시 1 |
| | | | 건축 | 236 | 경기도 6, 수원시 17, 용인시 12, 고양시 2, 화성시 18, 성남시 8, 부천시 13, 남양주시 22, 안산시 8, 평택시 6, 안양시 14, 시흥시 6, 파주시 6, 김포시 28, 의정부시 7, 광주시 7, 하남시 4, 양주시 3, 광명시 3, 오산시 4, 이천시 6, 안성시 9, 의왕시 3, 양평군 6, 여주시 1, 동두천시 3, 과천시 8, 연천군 6 |
| | | | 건축 (장애인) | 9 | 경기도 2, 고양시 1, 부천시 1, 평택시 1, 시흥시 1, 파주시 1, 광주시 1, 양주시 1 |
| | | | 건축 (저소득층) | 4 | 성남시 1, 부천시 1, 시흥시 1, 김포시 1 |
| | | | 지 적 | 56 | 수원시 5, 용인시 4, 고양시 1, 화성시 5, 성남시 4, 부천시 4, 안산시 3, 평택시 5, 안양시 1, 시흥시 1, 파주시 2, 김포시 5, 의정부시 1, 광주시 1, 하남시 2, 광명시 2, 오산시 1, 안성시 4, 포천시 2, 양평군 2, 여주시 1 |
| | | | 지 적 (장애인) | 2 | 김포시 1, 하남시 1 |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9급) | 9급 | 방재 안전 | 소 계 | 86 | |
| | | | 방재 안전 | 84 | 수원시 2, 용인시 2, 화성시 10, 성남시 1, 부천시 1, 남양주시 2, 평택시 4, 시흥시 3, 파주시 2, 김포시 5, 의정부시 3, 광주시 6, 하남시 2, 양주시 2, 광명시 4, 군포시 4, 오산시 3, 안성시 6, 구리시 3, 의왕시 3, 양평군 3, 여주시 2, 동두천시 2, 과천시 1, 가평군 5, 연천군 3 |
| | | | 방재 안전 (장애인) | 2 | 광주시 1, 양주시 1 |
| | | 방송통신 | 소 계 | 56 | |
| | | | 통신기술 | 54 | 경기도 3, 수원시 4, 고양시 2, 화성시 4, 성남시 3, 부천시 3, 남양주시 1, 안산시 2, 평택시 1, 안양시 10, 시흥시 2, 김포시 3, 의정부시 1, 광주시 1, 하남시 1, 양주시 1, 광명시 1, 군포시 2, 오산시 1, 이천시 2, 안성시 1, 양평군 2, 여주시 1, 동두천시 1, 연천군 1 |
| | | | 통신기술 (장애인) | 1 | 광주시 1 |
| | | | 통신기술 (저소득층) | 1 | 양주시 1 |
| |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7급) | 7급 | 7급 총계 | |
| 행 정 | 소 계 | | | 30 | |
| | 일반행정 | | | 23 | 경기도 23 |
| | 일반행정 (장애인) | | | 7 | 경기도 7 |
| 농 업 | 축 산 | | | 1 | 경기도 1 |
| 시 설 | 소 계 | | | 9 | |
| | 일반토목 | | | 5 | 경기도 5 |
| | 건축 | 4 | 경기도 4 | | |

※ 임용예정기관 안내

| 구 분 | 안 내 |
|------------|---|
| 지방자치단체 | 의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직속기관(인재개발원, 농업기술원, 보건소 등), 사업소(차량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구, 읍·면·동) 등에 임용되어 근무 |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사무기구에 임용되어 근무 |
| 경기도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에 임용되어 근무 |
| 경기도의회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설치된 의회의 사무기구(의회사무처)에 임용되어 근무 |
| 수원시, 용인시 등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임용되어 근무 |
| 고양시의회 등 |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사무기구(의회사무국·과)에 임용되어 근무 |

2

시험과목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 |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 | 세 무 | 지방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
|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 | | 속 기 | 속 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 | 공 업 | 일반기계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 | 일반전기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학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급) | 9급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 | | 일반토목 수도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7급)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 | | 농 업 | 축 산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
|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건 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 |

※ 2027년부터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한문포함)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시험’
으로 대체되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 전환에 따라, 시험시간이 110분(10:00~11:50)입니다.(총 5과목)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에 따라 총 5과목이며 시험시간은 100분(10:00~11:40)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생략)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시험명 | 계급 | 직 렬 | 직 류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9급) | 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
| | | 시 설 지 적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26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단,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합산 제외)

□ 단, 아래의 모집단위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지방의회 포함)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1.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단,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합산 제외)

○ 「시설9급(일반토목)」 및 「시설9급(건축)」의 아래 임용예정기관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거주지 제한 요건 없음)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포함 / 이외의 기관은 거주지 제한 요건 동일하게 적용

1. 시설9급(일반토목) :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2. 시설9급(건축) :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연천군

□ 거주지 제한 요건 관련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만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은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바.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 급여를 받는 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단,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 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급(지원)기간 등 응시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체 검증함

5

문제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시험명 | 과목수 | 공개 대상 과목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9급) | 38개 | 간호관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화학, 공중보건, 국어, 기계설계, 기계일반, 보건행정, 사회복지학개론, 식용작물, 안전관리론, 영어, 응용역학개론, 임업경영, 자료조직개론, 재난관리론, 재배학개론,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자공학개론, 정보보호론, 정보봉사개론, 조립, 지방세법, 지역사회간호, 지적전산학개론, 지적측량, 컴퓨터일반, 토목설계, 통신이론,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화학, 화학공학일반, 환경공학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 9개 | 경제학원론, 국어(한문포함), 물리학개론, 생물학개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행정법, 행정학, 헌법 |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명 | 과목수 | 비공개 대상 과목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8·9급) | 8개 | 가축사양, 가축육종, 도시계획개론, 수산경영, 수산일반,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조경학, 토지이용계획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7급) | 9개 |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수리수문학, 응용역학, 축산경영학, 토질역학 |

6

시험일정

|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취소기간 [추가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9급) | 3. 23.(월) 09:00 ~ 3. 27.(금) 18:00 | 3. 23.(월) 09:00 ~ 3. 30.(월) 18:00 [6. 1.(월) 09:00 ~ 6. 3.(수) 18:00] | 필기시험 | 6. 5.(금) | 6. 20.(토) | 7. 27.(월) |
| | | | 면접시험 | 7. 27.(월) | 8. 10.(월) ~ 8. 22.(토) | 9. 7.(월) |
| | | |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제공 신청자 증빙서류(붙임2 참조) 제출기간 | | 3. 23.(월) ~ 4. 1.(수) 18:00 ※ 4. 1.(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 7. 20.(월) 09:00 ~ 7. 24.(금) 18:00 | 7. 20.(월) 09:00 ~ 7. 27.(월) 18:00 [10. 12.(월) 09:00 ~ 10. 14.(수) 18:00] | 필기시험 | 10. 16.(금) | 10. 31.(토) | 11. 25.(수) |
| | | | 면접시험 | 11. 25.(수) | 12. 7.(월) ~ 12. 10.(목) | 12. 21.(월) |
| | | |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제공 신청자 증빙서류(붙임2 참조) 제출기간 | | 7. 20.(월) ~ 7. 29.(수) 18:00 ※ 7. 29.(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 제1회(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상기 기간 중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실시하며,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제1회(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 3. 23.(월) 09:00 ~ 3. 27.(금) 18:00
- 제2회(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 7. 20.(월) 09:00 ~ 7. 24.(금) 18:00

나.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8·9급] 5,000원

- (1)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 (2)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3) 단, 응시원서 제출 당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추후 확인 후 환급됩니다.
※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추가 취소기간 포함)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후에 시험 직렬(직류)을 변경하려면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함
-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붙임2] ‘장애유형별 (임신부 포함) 편의제공 안내’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붙임3]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참고

| 구분 | 토플 (TOEFL) (IBT) | 토익 (TOEIC) | 텡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 일반 | 71 | 700 | 340 | 65(level 2) | 625 |
| 청각장애인 | - | 350 | 204 | - | 375 |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1.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21.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 토익, 텡스, 지텔프: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접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에 성적 ‘취득예정’ 선택 후, 추가등록기간[2026.10.26.(월) ~ 10.30.(금)]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마이페이지 - 영어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에 성적 ‘취득예정’ 선택 후, 추가등록기간[2026.10.26.(월) ~ 10.30.(금)]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마이페이지 - 한국사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성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性)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참고

11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하였을 경우, 내년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12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

-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아래의 직렬(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류)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일반행정) | 세무(지방세) |
|----------|-----------------|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및 [붙임1]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계 급 | 가 산 비 율 | |
|------|--------------------|------|
| | 5% | 3% |
|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직렬(류)별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 참조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 시험명 | 등록기간(기간 중 상시 등록가능) |
|---------------------|--|
| 제1회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 6. 20.(토) 09:00 ~ 6. 22.(월) 18:00 |
| 제2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 10. 31.(토) 09:00 ~ 11. 2.(월) 18:00 |

○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

| 등록대상 | 등록사항 |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가점비율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 의사상자 등 여부, 증서번호, 가점비율 ※ 가점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시 의사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은 동일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사전에 본인의 등록대상 가산점을 확인한 후 등록기간 내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의 허위 기재, 잘못된 입력, 입력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산점 등록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은 면접시험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시험명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 제1회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 8. 22.(토) |
| 제2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 12. 10.(목) |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시험장소 공고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장소는 응시자가 지원한 임용예정기관 소재지의 학교가 아닐 수 있으며, 응시인원 및 시험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별 시험장 배정이 이루어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회(8·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의 경우 권역별로 시행하며, 필기시험 장소는 본인이 지원한 임용예정기관이 속한 권역 내에서 지정됨. 권역별 시·군 배정은 [붙임4] 참고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이 2026. 6. 20.인 경우, 2026. 4. 30. 현재 유효한 법령 등 기준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면접시험 평정방법,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같이 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미등록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기간 공고

차.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등 제출

※ 현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현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현혈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정불가 사례: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전출(전보) 제한기간 | 임용예정기관 |
|-------------|--|
| 3년 |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성남시의회, 안산시의회, 시흥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
| 4년 | 연천군 |
| 5년 |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안양시, 양주시,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용인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안양시의회, 파주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양주시의회, 양평군의회, 연천군의회 |

-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조희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0, 4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